

에이치엘성수프로젝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

<정관 신구대조표>

2차 개정 2025.11.05.

조항	개정 전 (제정)	개정 후 (2차 개정)
제9조의 2 (종류주식의 내용과 수)	②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연 [3.1]%로 한다.	② 제 2 종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연 <u>[3.2]</u> %로 한다.
부 칙 제1조 (시행일)	[신설]	이 정관은 202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.